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16호서식]

제 호
수 신 :
참 조 :
제 목 : 응급조치보고

행위자	성 명	()
	주민등록번호	(세)
	직 업	
	주 거	
	피해자와의 관계	
	가정 상황	성명 : 행위자와의 관계 : 주거 :
죄 명		
범죄사실요지		별지와 같음
피 해 자		
신 고 자		

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□ 폭력행위의 제지, 행위자·피해자의 분리
□ 「형사소송법」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
□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(피해자가 동의함)
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
□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
 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
 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 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 • 임시조치(제1호~제3호) 위반시 해양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□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